

일반대학원 비즈니스인텔리전스 내규

개정 2024.11.2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일반대학원 비즈니스인텔리전스학과의 학사운영 관련 세부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비즈니스인텔리전스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에 적용된다.

제2장 학위과정

제3조 (학위과정)

- 비즈니스인텔리전스학과에서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 석·박사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은 석사 및 박사학위 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 취득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장 입학전형

제4조 (전형구분)

비즈니스인텔리전스학과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제5조 (지원자격)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석·박사 통합과정 : 동조 제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

제6조 (입학전형위원)

- 입학전형위원은 각 학과에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전임교원 3인으로 구성한다.
- 입학전형위원은 학과의 평가방법에 따라 입학전형 지원자를 평가한다.

제7조 (입학전형방법)

① 일반전형

1.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를 병행한다
2.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
 - 가. 대학 및 대학원 성적
 - 나.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양식)
3. 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
 - 가. 전공에 대한 지식
 -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 다. 전공에 대한 적성
 - 라. 해당 학과 학업에의 지속성
 - 마.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인성역량
 - 바. 지원자의 관심과 해당 학과 전공과의 연관성

② 외국인전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다만, 입국사증 및 기타 사정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 지원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한다.

③ 편입학전형

편입학전형의 선발은 일반전형에 준한다.

제8조 (평가기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은 총점 100점만점으로 하며, 각각의 배점은 소정양식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 한다.

제2장 학위 취득 요건

제9조 (석사학위 취득요건)

비즈니스인텔리전스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석사과정은 총 24학점 중 비즈니스인텔리전스·MIS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계열의 타학과 관련 과목 수강이 필요할 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는다.
- ② 비동일계 석사과정 입학자는 학과장이 지정하는 전공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 ③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입학 후,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며, 논문 지도교수가 선정되기 전 까지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지도 및 학사관리는 학과장이 담당한다.
- ④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10조 (박사학위 취득요건)

비즈니스인텔리전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박사과정은 총 36학점 중 비즈니스인텔리전스·MIS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계열의 타학과 관련 과목 수강이 필요할 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는다.
- ② 특수대학원 졸업자 및 비동일계 출신 박사과정 입학자는 논문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전공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 ③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최고 6학점까지 독자연구(Independent Study)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 ④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박사과정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논문제출 한 학기 전에 학과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문 Proposal을 발표한 후 교수들의 합의 하에 논문 Proposal이 통과된 자에 한해서만 다음 학기에 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
 2. Proposal 신청 시 국내 등재지에 논문을 1편 이상(게재예정 포함)게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종합시험

제11조 (시험시기) 매년 3월과 9월로 한다.

제12조 (시험과목)

① 석사과정

해당 학생이 취득한 교과목 중 3과목을 택하여 시험 볼 수 있으며 해당 대학원생은 응시하는 학기 초에 출제 교수와 종합시험 범위에 대해서 상의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

해당 학생이 취득한 교과목 중 4과목을 택하여(4과목 중 반드시 비즈니스인텔리전스 과목을 2과목 이상 응시) 시험 볼 수 있으며 해당 대학원생은 응시하는 학기 초에 출제 교수와 종합시험 범위에 대해서 상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응시자격)

각 과정 소정학점의 3분의 2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 중 외국어시험 합격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4조 (응시절차)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과 사무실에 응시신청을 해야 한다.

제15조 (시험위원) 응시신청을 받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과 학과장이 시험위원이 되어 출제 내용, 유형 등을 협의한다.

제16조 (출제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17조 (합격인정 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시험결과관리) 학과장은 종합시험의 최종 결과를 매 학기 초 3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종합시험면제) 대학원학칙 제22조 5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이 이를 충족할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0조(준용) 본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학칙을 준용한다.